

인천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가단2912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6. 2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22. 8. 9. 접수 제2728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52698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31. 'C은 원고에게 42,220,867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의 어머니인 D가 2022. 6. 20. 상속인으로 피고와 C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2. 6.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인천 미추홀구, 인천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에 대한 기존 대여금 2,000만 원과 새로운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상속재산 중 C의 지분을 취득한 것일 뿐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갑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C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2,000만 원의 채무를 10년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지분의 가액은 공시가격으로 보더라도 48,750,000원으로서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